

예천군 동물보호 조례(안) 예고

「예천군 동물보호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예천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19. 8. 23.

예천군의회 의장



1. 제정이유

○ 「동물보호법」에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나. 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다.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라.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마.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3. 제정조례안

○ 붙임과 같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동물보호법」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- 다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- 마. 입법예고결과 :
- 바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- 사.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5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**2019년 8월 28일**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주 소 : 예천군의회 (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)
- (☎054- 650- 6407, FAX 054- 650- 6409)
- 전자우편(이메일) : syyh2000@korea.kr

예천군 동물보호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동물보호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동물”이란 「동물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.
2. “등록대상동물”이란 법 제2호 및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른 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(月齡)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.
 - 가. 「주택법」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는 개
 - 나. 가목에 따른 주택·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(伴侶) 목적으로 기르는 개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동물의 적절한 보호·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

한다.

제4조(동물복지계획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동물보호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
2. 동물보호정책의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사업에 관한 사항
3. 동물보호정책의 세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
4. 동물보호정책을 위한 민·관 협력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동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)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(이하 “소유자”라 한다)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하는 자(이하 “동물등록대행자”라 한다)가 있는 경우 등록대행자에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등록 사항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제6조(등록대상동물의 관리) ① 군수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유자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많은 사람이 동시에 출입하는 실내공연장, 실내극장
2. 공중목욕탕, 찜질방

제7조(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) 군수는 피학대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보호관리가 가능한 동물병원 또는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 (동물의 분양·기증) ① 법 제21조제1항의 “동물을 애호하는 자”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1.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
2.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
3. 기증 또는 분양 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

② 군수는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하며, 중성화수술에 동의하지 않고 분양받은 자에게는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분양해야 할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, 등록 후 분양을 하여야 한다.

제9조(보호비용의 부담)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호비용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.

③ 동물의 소유자가 법 제20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보호 비용은 전부 면제한다.

제10조(수수료 감면) 군수는 법 제42조에 따라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: 전액
2.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받아 등록하는 경우 : 전액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: 전액
4.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: 100분의 50

제11조(길고양이 관리) ①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길고양이를 구조 및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

방사할 수 있다.

제12조(동물보호업무의 지원) 군수는 동물복지 향상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동물 문화보급 및 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사업
2. 동물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
3. 동물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
4. 동물관련 교육 및 체험사업
5. 그 밖에 동물보호·복지향상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필요한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보호비용 산출기준(제11조제2항 관련)

1. 사료급여기준

동 물 명	규 격	사료급여기준(1마리/1일)
개, 고양이	6개월령이하 임신,수유기	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/kg
	6개월령초과	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/kg
기 타	-	동물의 생태에 따라 보호소장이 정함

2. 관리에 대한 수당

시중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.

(제3호의 위탁보호수수료를 적용하는 때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)

3. 위탁보호수수료(1마리 / 1일)

시중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이내

4. 포획·수송비

가. 포획 인부의 노임 : 시중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.

나. 수송비 :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포획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.

5. 치료비

가.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

따른다.

나.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과 위탁보호자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6. 기타비용

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산출경비에 대하여는 「동물보호법」 제19조제3항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할 수 있다.